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5.(금) 배포 즉시

간이대지급금 약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 및 추가 편취 시도한 사업주 구속

- 인천북부지청, 하청업체 대표 및 허위 근로자 등 동원하여 총 28명에게 약 7천만원 부정수급하게 하고 약 6천만원의 부정수급 시도한 건설업자 구속
- 허위 임금 체불 신고 이후 대지급금을 공사대금 청산 및 개인 도박 자금으로 편취하는 등 악의적인 부정수급 적발하여 엄정한 조치 계획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(지청장 이재희)은 **11월 6일(금)**, 실내 인테리어공사업을 운영하면서 하청업체 대표 및 내부 직ㅐ원과 공모해 **21명**에게 **대지급금 6,957만원을 부정수급하게** 하고 **9명**에게 **5,839만원을 추가로 부정수급** 하게 하려다 **적발**된 원청업체 대표 ㄱ씨(48세)를 **「임금채권보장법」 위반 혐의로 구속**했다고 밝혔다.

구속된 A사 대표 ㄱ씨는 **2022년부터 2024년**까지 **하청업체 대표 3명 및 내부 직원 ㅂ씨와 공모**해 **총 28명**에 대해 **약 1억 3천만원** 규모의 **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주도**한 혐의가 인정됐다. 특히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을 마치 A사가 고용한 것처럼 **허위의 노무대장**을 직접 작성하거나, 노동청에 **허위 임금 체불 신고**를 하도록 해 노동청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했고, 수사기관의 통신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**통신 기지국 조회 내역**을 **위조**해 제출하는 등 고도의 기술적 수법까지 동원해 **수사를 방해**했다.

이번 사건은 부정수급 공범 중 1명이 **부정행위를 제보**한 후 공범들의 자백, **계좌 추적**, **카카오톡 포렌식**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. 수사를 이어오던 인천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**체불 근로자를 보호**하기 위한 **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게** 함으로써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**공사대금**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거나, 일부는 **도박 자금**으로 사용하는 등 **죄질이 극히 불량**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.

ㄱ씨는 지난 **2024년 7월 입건**된 이후 수 차례의 **출석요구에 불응**하고 소재를 감춰 오다가 **체포영장**이 발부되어 **지명수배**된 바 있다. 이후 잠복근무 등에도 불구하고 체포하지 못하던 중 지난 **11월 3일(화) 원주경찰서에서 체포**됐다. 인천북부지청은 피의자신문에서 범죄사실 전부를 **자백**한 ㄱ씨에 대해 **11월 4일(수)** 조사 종료 후 **사후구속영장을 신청**했으며, 이후 **11월 5일(목)** 법원은 **범죄의 중대성**과 **증거 인멸** 및 **도주 우려** 등을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

이재희 인천북부지청장은 "**대지급금 제도**는 **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**하는 제도로서,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**기금**의 **건전한 운영**을 가로막고 부담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**선의의 사업주들의 부담** 또한 가중시키는 등 **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**이다"라고 밝히며, "향후에도 **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**에 대해서 **구속수사**를 **원칙**으로 **엄정하게 대처**해 나가겠으며, **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**는 물론 **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금**도 부과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**민·형사상 조치**를 검토해나가겠다."라고 강조했다.

붙임. 대지급금 제도 개요

담당 부서	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1과	책임자	과 장	전상현 (032-540-7907)
		담당자	근로감독관	황성기 (032-540-794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공공누리

붙임 **대지급금 제도 개요**

□ 개요

○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**국가가 사업주를 대신**하여 **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**함으로써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모

□ 지급 사유 및 대상

○ **(도산대지급금)**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**회생절차개시결정** 또는 **파산선고** 결정, 지방고용노동관서의 **도산등사실인정** 결정

- **퇴직 근로자**만 대상

○ **(간이대지급금)**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**법원의 확정판결**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**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**로 체불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

- **퇴직 근로자** 또는 **저소득 재직 근로자**(최저임금 110% 미만)가 대상

□ 지급 범위

○ **(퇴직자)** <도산>**최종 6개월분**·<간이>**최종 3개월분의 임금**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, **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** 중 체불액

○ **(재직자)** 소송·진정 등 제기일 기준 **마지막 체불 발생일로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**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 중 체불액

□ 상한액 ※「체불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」참조

○ **(도산대지급금) 최대 3,150만원**(연령대별, 월별(또는 연별) 상한액 존재)

○ **(간이대지급금) 퇴직자 1,000만원**(임금 등 700만원,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)
재직자 700만원